

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안석수)</p> <p>가. 개 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- 개정된 전염병예방법(2000. 8. 1)에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바뀌에 따라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및 병명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- 부랑한센병환자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근거를 신설(제2조제8호, 제9호)하여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 참여 유도 및 관리토록 현행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. <p>나. 검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병명변경 관련조문 정비와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 ○ 안 제2조제8호, 제9호 -위탁사업추가 위탁사업에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 참여 유도 및 관리사업은 - 현재 수탁자와의 협약서에 의거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, 조례에 명문화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. ○ 안 제3조제2항 -위탁사업 경비지급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 경비를 전액 지급 가능토록 하였음. - 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수탁단체에 대한 과다지원의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기 위탁사업 경비지원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</p> <p>생 략</p> <p>5. 토론요지</p> <p>없 음</p>	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</p> <p>미구성</p> <p>7. 심사결과</p> <p>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</p> <p>없 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없 음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사회복지시설"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아동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. 2. "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"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범람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. <p>제3조(설치 등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5조(이용자의 자격)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, 부랑인 보호시설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으로 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</p>
--	--

<p>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</p> <p>1.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.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.위탁기간 4.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수탁자 선정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시설관리 등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</p>	<p>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중이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중이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로 본다.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공공시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의 여성정책관(여성개발담당관)란의 시설명란 중 “○시청 어린이집·보육 정보센터”를 “○시청 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표의 같은란 중 “○시립아동복지시설”, “- 시립 소년의 집”, “- 시립 동부아동상담소”, “○시립 영보자애원”은 이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표의 보건복지국(사회복지과)란,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및 보건복지국(장애인복지과)란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.</p> <p>②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의 여성정책관(여성개발담당관)란의 시설명란 중 “○시립 영보자애원 관리운영”을 삭제하고, 같은표 같은란 중 “○서울시청 어린이집·보육정보센터 관리운영”을 “○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표의 같은란중 “○시립 소년의 집 관리운영”, “○시립 동부아동상담소 관리운영”은 각각 이를 삭제하며, 같은표의 보건복지국(사회복지과)란,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및 보건복지국(장애인복지과)란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.</p>		
<p>【 별 표 】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(제3조 관련)</p>			
주관국(과)	시 설 명	위 치	주 요 기 능
여성정책관 (여성정책 담당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시립영보자애원 ○시립소년의집 ○시립동부아동상담소 ○시립부녀보호소 ○시립아동상담소 ○시립보육정보센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 용인 이동 목리464 은평구 응암동 42-5 동대문구 장안동 329-1 강남구 수서동 산4-1 강남구 수서동 산4-1 중구 서소문동 5-1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랑인(여) 수용보호 요보호아동 수용보호 요보호아동상담·치료·일시보호 부랑인(여)일시수용보호 요보호아동상담·치료·일시보호 보육관련정보 제공
보건복지국 (사회복지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시립은평의마을 ○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은평구 구산동 산61-8 양천구 신정2동 1278-1외 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랑인(남) 수용·보호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

주관국(과)	시 설 명	위 치	주 요 기 능
보건복지국 (노인복지과)	○시립노인요양원	노원구 상계동 산51	요보호 저소득노인 수용보호
	○시립양로원	강동구 고덕동 317-23	"
	○시립엘림노인요양원	경기 군포 산본동 1100	"
	○시립중계노인복지관	노원구 중계동 501-1	"
	○시립엘림경로원	경기 군포 산본동 1100	노인들에 대한
	○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	관악구 봉천동 726-3	취미·여가·건강관리
	○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	노원구 하계동 170-1	등의 노인복지프로그램
	○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	구로구 구로동 25-1외3	운영
	○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	중랑구 면목동 178-8	"
	○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	성북구 종암동 66-25	"
	○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	은평구 진관외동 산140	"
	○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	강서구 등촌동 661-4	"
	○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	마포구 창전동 140	"
	○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	강북구 수유동 122-3	"
	○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	성동구 마장동 798-1	"
	○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	금천구 시흥동 558-1외11	"
	○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	도봉구 쌍문동 19-12	"
	○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	용산구 한남동 108-1외5	"
	○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	동작구 대방동 335-10	"
	○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	동대문 청량리동 11-1	"
○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	서대문구 천연동 117-3외2	"	
○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	광진구 군자동 364-16	"	
○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	강동구 명일동 48-10	"	
보건복지국 (장애인 복지과)	○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	강동구 고덕동 317-24	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
	○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	동작구 신대방동 395	"
	○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	노원구 상계동 771	"
	○시립상이군경복지관	노원구 상계동 771	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
	○시립맹인복지회관	노원구 상계동 771	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
	○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	노원구 상계동 771	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
	○시립곰두리체육센터	송파구 오금동 51	장애인체력관리프로그램 운영
	○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	동작구 신대방동 395	정신지체인 복지프로그램 운영

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“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”로 한다.</p> 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·시행계획 등</p>
---	--